

# 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세칙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세칙은 상명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15조(운영세칙)에 의거 서울캠퍼스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장학금 종류 및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장 교내장학금

제 2 조 (장학금의 종류) 본교 학부 과정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명장학금
2. 성적우수장학금
3. 면학장학금
4. 디딤돌장학금
5. 근로장학금
6. 리더십장학금
7. 체육특기장학금
8. 국가보훈장학금
9. 형제·자매장학금
10. 복지장학금
11. 국가고시장학금 <2017.11.07. 폐지>
12. 공로장학금
13. 특별장학금
14. 외국인장학금
15. 나눔장학금
16. 사회봉사장학금
17. 동문자녀장학금
18. 해외봉사장학금
19. 글로벌장학금
20. 경연·공모대회장학금
21. 기금장학금
22. 산업체장학금
23.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장학금

- 24. 다문화장학금
- 25. 다자녀장학금
- 26. 기타장학금

**제 3 조 (상명장학금)** 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

②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수혜조건, 장학종류 및 금액은 매년 총장이 정하며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고·시행한다.

**제 4 조 (성적우수장학금)** ① 성적우수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

1. 학과수석·차석장학금: 직전학기 성적이 학과/학년별 수석, 차석인 자에게 지급한다. 단,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.5이상이고 학과/학년별 인원이 입학정원의 30%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며, 계약학과는 학과/학년별 인원이 장학금 지급시 30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.
2. 향상장학금: 직전학기 성적보다 평점평균이 1.5이상 상승한 자에게 지급한다. 단, 비교학기 성적이 학점포기로 변경된 자와 학사경고 대상자는 제외한다.
3. 다전공우수장학금: 다전공 이수자 중 이수학기별 상위 10%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한다. 단, 부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자는 제외한다.

②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해외교환, 인턴 등 현장실습 수업으로 9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성적우수장학금은 동일학기에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수혜대상자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적용한다.

**제 5 조 (면학장학금)** ① 면학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.

1. 면학A: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 학과장이 추천한 자
2. 면학B: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장이 추천한 자
3. 면학C: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 학생처장이 선발한 자

**제 6 조 (디딤돌장학금)** ① 품행이 방정하며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중에서 소속 학과장 또는 학생처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.

**제 7 조 (근로장학금)** ① 교내 행정부서 및 기관, 학과사무실 등에서 근로를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.

② 근로 장학금은 학기 및 방학에 중복으로 수혜할 수 없다.

③ 근로 장학금은 근로종료 후 지급하며 근로기간 중도탈락시 지급할 수 없다.

④ 근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**제 8 조 (리더십장학금)** ① 학생자치기구 또는 부속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자 중 그 자격이 인정된 자에게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의 추천으로 학생처장이 지급한다.

② 학생자치기구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**제 9 조 (체육특기장학금)** ①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 본교 체육부 운영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.

**제 10 조 (보훈장학금)**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청, 통일부 등 국가기관에서 교육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, 독립유공자 (손)자녀로서 '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' 발급이 가능한 자 / 새터민 또는 새터민 자녀 중 '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' 발급이 가능한 자에게 지급한다.

② 국가유공자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교비로 지원하며 국가유공자의 자녀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반액(50%는 국고로 보조함)을 감면한다.

**제 11 조 (형제·자매장학금)** ① 재적 중인 형제·자매학생 중 재학생 모두에게 지급한다.

② 형제·자매가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동시 재학 중에 학부생에 한하여 지급한다.

**제 12 조 (복지장학금)** ① 학교법인 상명학원이 임용한 본 대학교 교(임)직원(법인, 각급 부속학교 포함)의 직계가족에게 지급하되, 재직 중 사망 및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한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(명예)퇴직한 자의 경우 당시 재적중인 직계가족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수업료 전액(입학금 포함)을 지급한다.

**제 13 조 (국가고시장학금) 폐지 <2017.11.07.>**

① 국가고시장학금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기존 장학금(사법시험, 행정고시,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, 기술고시, 공인회계사 및 입법고시에 1차 합격자에게는 1개 학기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수업료 전액)을 지급한다.

**제 14 조 (공로장학금)** ① 국가, 사회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총장의 재가를 받아 지급한다.

②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**제 15 조 (특별장학금)** ① 사고, 재난 등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재가를 받아 지급한다.

②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**제 16 조 (외국인장학금)** ① 외국인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본교의 입학조건에 의해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.

1.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

2. 교환학생, 복수학위 과정 유학생

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 17 조 (나눔장학금)** ① 나눔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.

1. 나눔(기초):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분위인 자
2. 나눔(장애): 본인이 장애등급 6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부, 모 중 1인이 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
3. 나눔(생활비): 탈북대학생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대상자 또는 기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

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,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**제 18 조 (사회봉사장학금)** ① 직전학기(학기 및 방학) 중 순수사회봉사단체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, 상명사회봉사단에 가입하여 3회 이상 행사 참가실적이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.

②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**제 19 조 (동문자녀장학금)** ① 서울 및 천안캠퍼스 학부를 졸업한 동문의 자녀를 대상으로 1개 학기 수업료의 50%를 지급한다. 단, 대학원을 졸업한 동문자녀는 제외한다.

②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동문자녀는 8개학기 동안 수업료의 50%를 지급한다.

**제 20 조 (해외봉사장학금)** ① 해외봉사단에 선발되어 해외봉사에 참가하는 자에게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지급한다.

② 해외봉사 활동기간중 중도 탈락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

③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**제 21 조 (글로벌장학금)** ① 대학에서 시행하는 해외탐방 프로그램(해외어학연수, 해외연수, 해외인턴십, 해외교환학생, 해외복수학위 등)에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.

② 글로벌엘리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**제 22 조 (경연·공모대회 장학금)** ① 각종 경연·공모대회 우수자에게 수상 실적물을 첨부해서 해당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학생처장이 지급한다.

②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**제 23 조 (기금장학금)** ① 기금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상록장학금
2. 혜원장학금
3. 정채우장학금

② 기금장학금은 해당기금 운영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.

**제 24 조 (산업체장학금)** ① 계약학과 설치·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

**제 25 조 (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장학금)** 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에게 지급한다.

②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수혜조건, 장학종류 및 금액은 매년 총장이 정하며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고·시행한다.

**제 26 조 (다문화장학금)** ①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본교 재학생에게 지급한다.

**제 27 조 (다자녀장학금)** ① 형제·자매중 본교 재학중인 셋째부터 지급한다.

**제 28 조 (기타장학금)** ① 교내 각 행정부서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처장의 승인으로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 29 조 (지급액)** ① 장학금 지급액은 매학년도 총장이 정한다.

**제 30 조 (기타)** ① 장학생 선발시 직전학기 성적이 해외교환, 인턴 등 현장실습 수업으로 산출되지 않을 경우 직전학기의 성적을 적용한다.

② 캠퍼스 및 학과간 전과의 경우 편입생 기준을 적용한다.

③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등록 후 휴학을 한 경우에만 이월이되며 미등록 휴학의 경우 복학시 장학금 지급할 수 없다. 단 군휴학의 경우 증빙 후 지급한다.

④ 기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 관한 사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(편입생 포함)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 국가고시 장학금은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, 2018학년도 1학기부터 폐지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2018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은 붙임과 같다.

[붙임] 2018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

| 장 학 금 명           |              | 2018학년도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지급기준    | 지급기간      | 지급액(원)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성적<br>우수<br>(신입생) | 입학성적우수(수시A)  | 입시요강 공고 | 1학기       | 등록금 전액                    | 입학금 포함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입학성적우수(수시B)  | "       | 1학기       | 등록금의 50%                  | 입학금 50%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전체수석         | "       | 8학기       | 등록금 전액                    | 입학금 포함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단과대학 수석      | "       | 4학기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학과수석         | "       | 1학기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수능우수A        | "       | 8학기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수능우수B        | "       | 4학기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수능우수C        | "       | 2학기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 |
| 기 타<br>(신입생)      |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| "       | 8학기       | 정원내 등록금의 60%              | 입학금 제외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8학기       | 정원외 등록금의 50%              | 입학금 제외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서해5도전형       | "       | 8학기       | 등록금의 30%                  | 입학금 제외                |
| 학과수석              | 장학금지급 규정     | 1학기     | 등록금 전액    | 성적기준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학과차석              | "            | 1학기     | 등록금의 70%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전공우수             | "            | 1학기     | 등록금의 50%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면학A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| 1학기     | 등록금의 40%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면학B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| 1학기     | 등록금의 40%  | 저소득층(0~8분위)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면학C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| 1학기     | 일정금액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근로 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| 학기, 방학  | 1,100,000 |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체육특기              | "            | 8학기     | 등록금전액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가보훈 / 통일부        | "            | 8학기     | "         | 보훈처/ 통일부(50%),<br>대학(50%) |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보호대상자           | "            | 8학기     | "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형제.자매             | "            | 해당학기    | 700,000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복지 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| 8학기     | 등록금 전액    | 입학금 포함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문화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| 8학기     | 700,000   | 입학금 제외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자녀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| 8학기     | 700,000   | 입학금 제외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리더십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| 1학기     | 일정금액      |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<br>(학생자치기구)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디딤돌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| 1학기     | 일정금액      | 디딤돌 I : 소득분위 기준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글로벌(해외봉사)         | "            | 일시      | 일정금액      |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별(홍보대사)          | "            | 1학기     | 1,500,00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눔                | (기초생활수급자)    | "       | 해당학기      | 등록금의 30%                  | 소득분위 기준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(장애가족)       | "       | 8학기       | 700,000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(생활비 장학금)    | "       | 해당학기      | 1,000,000                 |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<br>(저소득층) |
| 사회봉사              | "            | 1학기     | 700,000   |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외국인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| 8학기     | 일정금액      | 입학조건 및 내부규정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향상 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| 해당학기    | 700,000   | 성적기준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동문자녀              | "            | 1학기     | 등록금의 50%  | 입학금 제외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